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	2008. 5. 6	규칙 제 935호	
일부개정	2011. 3. 15	규칙 제1006호	
일부개정	2013. 6. 5	규칙 제1058호	
일부개정	2013. 8. 1	규칙 제1062호(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4. 7. 11	규칙 제1078호(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3. 11. 29	규칙 제129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9>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9>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평가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

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5>

②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5, 2013. 6. 5>

③ 평가 주관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수 추첨자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④ 평가 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5>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평가 주관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평가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3. 11. 29>

② 평가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 중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광명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8. 1, 2018. 7. 31>

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7. 31, 2023. 11. 29>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5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5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규칙 제1062호,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1 규칙 제1078호,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3. 11. 29 규칙 제1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7. 1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문분야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장명		직위(직급)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교	학위	전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 (인)

광명시장 귀하

